

陶菴 李緯의 禮問答과 變禮 인식

김윤정*

-
- | | |
|-------------------------|------------------|
| 1. 머리말 | 3. 이재의 변례 인식과 논의 |
| 2. 『도암집』 소재 예문답의 구성과 성격 | 4. 맺음말 |
-

초록: 이재의 예문답은 근기의 낙론학자들뿐 아니라 지방의 문인들과 호론학자 등 다양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이래로 예서의 확충과 예학의 발달을 통해, 예문답에 참여하는 지식인층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事勢를 중심으로 變禮의 범주를 확장하고 先儒의 예설을 근거로 義起를 행하면서 이재의 동의를 구했다. 이재는 명확한 禮律이 있음에도 사세를 강조하여 변례로 논의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적용할 예율을 찾지 못해 의심스러운 사례만을 변례로 인정하고, 의기를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율 자체의 불일치와 예율을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변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는 立後와 관련된 追服의 문제를 변례로 인식했다. 계후자의 行禮에서 重統과 別嫌을 원칙으로, 본생친에 대한 降服과 국가의 허가서인 禮案을 통한 입후의 성립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후가 喪中에 행해질 경우, 계후자의 追服을 기준으로 상례 절차의 조정, 조부모에 대한 稅服, 궤연 철거 문제 등이 중요한 변례로 논의되었다. 이재는 다양한 禮經과 선유설을 검토하여 의기를 행했고, 당대 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예설을 재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재는 대표적인 竝有喪인 父喪 중의 祖父喪과 母喪에 대해 義起를 행했다. 이 사안은 명확한 예문이 없는 변례로서, 김장생, 송시열 등 선유들의 의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재는 이러한 예설들을 검토한 후, 부상 중의 조부상과 모상은 모두 삼년복을 입는다는 새로운 의기를 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중 조부상의 代服과 관련된 불효의 문제를 부의 효심을 따르는 ‘親親의 承重’으로 재해석했다. 부상 중의 모상에는 『의례』의 경문을 따른다는 원칙론을 주장했지만, 人情에 대한 오랜 논의를 담아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李緯, 『陶菴集』, 變禮, 義起, 追服, 竝有喪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머리말

陶菴 李緯(1680-1746)는 18세기 洛論을 주도했던 山林으로서, 조선의 대표적인 예서인 『四禮便覽』을 저술했다. 이재에 대한 연구 역시 心性論과 禮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湖洛論爭과 관련하여 이재의 人物性同論과 낙론학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¹⁾ 또한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이재의 예학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사례편람』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실제에 접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례편람』 자체가 갖는 行禮書로서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²⁾

그런데 이재의 예학에 대한 연구가 『사례편람』에 집중되면서, 『陶菴集』에 수록된 다양한 예문답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재는 예학에 밝은 산림 학자로서, 의심나는 예를 토론하고 답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기의 낙론학자와 지방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호론학자들과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폭넓게 예설을 교류했다. 이러한 예문답은 18세기 예의 실천을 위해 논의되었던 다양한 變禮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7세기에 禮學이 발전하고 예의 실천이 강조되면서, 行禮는 더욱 정교해지고 변례의 상황도 복잡해졌다. 18세기에는 축적된 예설을 토대로 변례를 고증하고 행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재의 『사례편람』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行禮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 1) 최성환, 2001 『朝鮮後期 李緯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教育』, 『역사교육』 77; 이경구, 2006 『湖洛論爭을 통해 본 철학논쟁의 사회정치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6; 조성산, 2007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권오영, 2009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
 - 2) 이길표·김인옥, 2001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에 나타난 祭禮의 문헌적 比較 고찰』, 『생활문화연구』 15; 문영표, 2003 『四禮便覽과 거가잡복고의 服飾 연구: 冠禮와 婚禮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운정, 2011 『18世紀 禮學 研究: 洛論의 禮學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장동우, 2018a 『행례서行禮書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가례家禮 연구의 특성 및 함의: 『四禮便覽』과 『家禮輯要』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김운정, 2020 『조선후기 사례의 전형-『四禮便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조선후기 예학에서 변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학 연구와 더불어 변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다. 복제예송 관련 변례 논의와 18세기 洛論의 변례 담론이 검토되었고, 退溪 李滉(1501-1570)과 性齋 許傳(1797-1886)의 변례 예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³⁾ 최근 변례서를 중심으로 변례의 범주화를 분석하고, 변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연구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변례는 예를 변경함 또는 그 결과 변경된 예로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예를 제정하는 경우와 명문규정이 존재함에도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이 논증되었다.⁴⁾

이 글에서는 이재의 예문답을 통해 '變禮' 인식의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재는 변례의 기준을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무분별한 義起보다는 禮律을 따른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례 인식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재의 예설을 검토하였다. 먼저, 『陶菴集』에 수록된 편지에서 家禮와 관련된 문답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08건의 예문답에 참여한 88인을 조사하고, 『가례』의 체제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였다. 喪禮를 중심으로 변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의기보다 예율을 강조하는 이재의 대응방식이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이재의 변례 인식과 義起로 드러나는 예설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대표적인 변례인 立後 관련 追服과 竝有喪의 상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내면적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의 예문답은 18세기 變禮의 실제와 이에 대한 예학적 대응을 보여준다. 18세기 조선예학의 축적적 발전을 토대로 변례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이재는 沙溪 金長生(1548-1631), 尤庵 宋時烈(1607-1689) 등 조선 학자들의 예설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토대로 새로운 의기를 시행했다. 이재는 우리나라 학자의 禮論이 변례

3) 김병현, 2008 『朝鮮時代 變禮에 對한 研究: 喪服 變禮와 그 禮律 解釋方法의 變化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윤정, 앞의 논문; 한재훈, 2011 『退溪 禮學思想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최일범 외, 2012 『性齋 許傳의 禮學과 變禮 論議에 대한 연구』, 『온지논총』 32.

4) 장동우, 2018b 『變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家禮』연구의 특성 및 함의: 『禮疑答問分類』와 『禮疑類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1, 345-346면.

에 대응하는데 가장 절실하고, 가까워서 증명하기 쉽다고 판단했다.⁵⁾ 이러한 인식은 이재의 제자인 謙齋 朴聖源(1697-1767)이 조선의 예설만을 집대성한 거질의 예서인 『禮疑類輯』을 편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도암집』 소재 예문답의 구성과 성격

1) 예문답의 질의자 분석

이재는 조선후기 노론가인 牛峯 이씨로서, 辛壬獄事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용인 寒泉精舍에서 講學하였다. 그의 문인들은 이재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스스로를 ‘泉門’으로 인식하였고,⁶⁾ 이재 사후 스승의 유고 편찬에 집중하였다. 스승의卒哭(1747년 1월 2일) 직후부터 유고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재의 저술인 『朱子語類抄節』, 『中庸講說』 등에 대한 校讎가 진행되었다.⁷⁾ 1763년(영조39)에는 박성원이 주도하는 문집 편찬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박성원은 3월에 『陶庵先生行狀』을 지었고, 5월에는 李宜哲, 兪彥鏞, 姜逵와 함께 『陶庵先生遺集』을 수정하였다.⁸⁾

그러나 문집 편찬의 주도권을 두고 박성원과 洪啓禧(1703-1771)가 갈등하면서, 문집 간행이 지연되었다. 1763년 8월에 박성원은 유언집 등과 聯名으로 홍계희에게 편지를 보내, 문집 간행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홍계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빼고, 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초고를 교정하게 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⁹⁾ 이러한 가운데 1767년 박성원이 사망함으로써 문집 간행

5) 『禮疑類輯』 「禮疑類輯序」, “懼嘗以是稟于我陶菴先生, 先生教以集說固爲家禮羽翼, 然猶不如東賢禮論之取切於應變, 又近而可易徵也.”

6) 최성환, 앞의 논문, 94-95면.

7) 김윤정, 2013 『18세기 師服의 성격과 실제: 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63, 485-492면.

8) 『謙齋年譜』 권2, 「癸未【先生六十七歲】」, “三月 … 撰陶菴先生行狀. … 五月, 修整陶菴先生遺集. 【與李宜哲·兪彥鏞·康逵偕.】”

9) 『謙齋年譜』 권2, 「癸未【先生六十七歲】」, “八月 … 貽書洪啓禧, 嚴斥擅刊師門遺集事. 【兪彥

은 중단되었다. 이후 손자 李采가 주도하여 1803년에 原集 50권 25책을 整理字體活字로 간행하였다.

『陶菴集』의 「書」를 통해 이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문답을 살펴볼 수 있다. 「서」는 총 15권으로 883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 家禮와 관련된 편지는 126편으로 약 14%에 해당된다(표 1).¹⁰⁾ 예설 논의는 주로 問目的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예문답은 208건에 달한다(부표1). 或人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88인이 예문답에 참여하였다(표 2).

먼저, 가장 많은 예문답을 주고받은 대상은 여흥 민씨 外親들이었다. 이재의 외조부인 驪陽府院君 閔維重(1630-1687) 가문은 신임옥사 이후 노론의 의리론을 대표하면서 이재와 정치적·학문적 토대를 공유했다. 이재는 외사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여기에는 예문답도 다수 포함되었다. 민유중의 아들인 外叔 閔鎮遠(1664-1736) 1건, 그 아들 閔昌洙(1685-1745) 12건, 閔鎮厚의 아들인 閔翼洙(1690-1742) 7건, 閔愚洙(1694-1756) 8건에 달한다.

친족인 從弟, 아들 등과의 예문답은 집안 의례에 대한 이재의 당부가 주를 이루었다. 이재의 손자를 입후하고자 하는 중제 李德章에게, 입후는 昭穆에 맞아야 하므로 손자 향렬을 후사로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들 李濟遠에게 보낸 편지는 집안의 혼례와 여동생 兪彥欽 처의 상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언흠의 처는 남편이 사망하자, 小祥을 지낸 후 곡기를 끊고 자결하였다. 이재는 『가례』를 근거로, 시집갔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다는 점에서 降服하지 않고 자신과 아들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庶從弟가 四名日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잘못을 타이르고, 庶再從姪에게 墓表의 건립을 권하는 등 서열의 의례 실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楊應秀 9건, 李惠輔 8건, 朴聖源 5건, 金碇 5건, 兪彥鏞 2건 등 문인들과의 예문답을 살펴볼 수 있다. 양응수(1700-1767)는 호남 순창 출신으로, 천문에

鏞·洪章漢·李灌·韓敬養·李行祥聯名.】”

10) 『陶菴集』에는 서원의 享禮나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묘 배향 관련 논의가 다수 등장하는데, 家禮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서 ‘호남의 최고 학자[湖南中第一]’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스승 사후 묘소를 지키며 1년간 居喪했고, 『四禮便覽』의 교정 과정에서 『四禮便覽辨疑』를 저술하였다. 양응수는 이재를 아버지처럼 여겨 항상 스스로를 ‘小子’로 칭했고, 近畿의 사족인 여러 동문들과 돈독한 학적·인적 유대를 형성했다.¹¹⁾

18세기 낙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호남이나 관북 학자들과의 예문답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李基敬(1713-1787)은 전주 출신으로, 24세에 이재의 제자가 되었고 대사간과 한성우윤 등을 역임했다.¹²⁾ 李頤正은 역시 호남인으로, 양응수와 교류하였다.¹³⁾ 관북학자인 鏡城의 李載亨(1665-1741)과 함흥의 徐永後도 예문답에 참여하였다. 이재형은 定宗의 아들인 德泉君 李厚生의 후손으로, 그의 집안은 7대 조 李世良의 귀양으로 인해 경성에 세거하였다. 그는 北評事로 온 金昌協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 낙론이 함경도로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¹⁴⁾

그 외 다수의 문인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였다. 박성원은 『禮疑類輯』과 『敦孝錄』 등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이자, 言官과 講官 등을 두루 역임한 문신이었다. 그는 이재의 高弟로서 문집 편찬을 주도했고, 『寒泉詩』 논쟁에서 스승을 대신하여 韓元震(1682-1751)의 人物性異論을 비판하였다. 이혜보는 李鼎輔(1693-1766)의 종제이고 그의 아들 健源이 이정보의 후사가 되었다. 洪啓能의 사돈으로, 이기경과 함께 흥계희의 黨人으로 간주되었다.¹⁵⁾ 김정(1691-1738)은 어려서부터 한천정사 인근에 거주하였고, 이재가 집안의 자제와 같이 여긴 인물이었다.¹⁶⁾ 유언집(1714-1783)은 兪彦鎬의 형으로, 예서인 『五服名義』를 저술했고 『禮疑類輯』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沈潮(1694-1756)와 宋相允(1674-1753)은 權尙夏(1641-1721)의 문인으로 한원진, 尹鳳九(1683-1767)와 교류한 호론학자들이다. 심조는 立後로 인한 追服 시

11) 김윤정, 앞의 논문, 2013; 김윤정, 2014 『白水 楊應秀의 『四禮便覽辨疑』 연구』, 『규장각』 44.

12) 이형성, 2011 『木山 李基敬의 삶과 思想에 대한 一攷』, 『퇴계학논총』 18, 169면.

13) 『白水集』 권30, 『附錄·從遊錄』.

14) 조성산, 앞의 책, 195-196면.

15) 『日省錄』 정조 3년 2월 6일.

16) 『陶菴集』 권44, 『通德郎金公墓誌』.

几筵 철거 문제를 이재와 한원진에게 질문하면서 湖洛의 예설 논의를 주도했다.¹⁷⁾ 호락논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鄭夢周, 李珥, 金長生, 宋時烈 등 大賢의 후손들도 예문답에 참여하였다. 특히 정몽주의 12대손 鄭鏞은 鄭鎬의 계후자 鄭夏濟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攝宗이 되어 집안 제사를 주관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이재에게 질문하였다. 이재는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정몽주 집안의 계후 문제를 다룬 『圃隱先生立宗議』를 저술하였을 것이다. 그는 먼저 입후하여 宗子로 삼았던 鄭道濟에게 다시 입후하여 종통을 잇게 해야 하고 나중에 입후했던 鄭夏濟는 次子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처음부터 정도제에게 입후하지 않은 잘못을 되돌린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표 1〉 『陶菴集』의 예문답 분포

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편수	67	33	59	60	62	58	38	80	64	55	85	76	29	56	61	883
예문답(書)	4	1	1	11	25	20	5	12	11	7	8	9	3	5	4	126
예문답(問目)	6	1	1	13	38	30	12	15	22	17	18	16	10	5	4	208

〈표 2〉 『陶菴集』 예문답의 질의자 분석

	이름	본관(거주)	질의 수	비고		이름	본관(거주)	질의 수	비고
1	閔鎮遠	驪興(京)	1	外叔	45	尹啓鼎	咸安(公州)	1	
2	李秉常	韓山(京)	3		46	朴挺陽	咸陽[高陽]	4	朴知誠 후손
3	黃奎河	昌原(京)	1		47	成德朝	昌寧(京)	1	成震齡의 子
4	尹陽來	坡平(京)	1		48	趙宗溥	淳昌[京]	1	
5	李載亨	全州(鏡城)	1		49	李渭載	韓山[京]	1	
6	俞拓基	杞溪(京)	1		50	李明煥	全州(京)	1	
7	洪啓禕	南陽[京]	1		51	張學聖	仁同[京]	1	
8	金鎭東	義城(奉化)	1		52	閔昌洙	驪興(京)	12	外從弟
9	李度翼	延安(京)	1		53	閔翼洙	驪興(京)	7	外從弟

17) 3장 1절 참조.

18) 정몽주 집안의 계후 문제는 김학수, 2012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포은학연구』 10 참조.

10	李崇臣	延安[京]	1		54	閔愚洙	驪興(京)	8	外從弟
11	洪啓祚	南陽(京)	1		55	申 崑	平山	1	
12	洪啓祥	南陽(京)	1		56	安 衢	順興(京)	4	
13	李鼎輔	延安(京)	1	李廷龜 후손	57	楊應秀	南原[淳昌]	9	
14	李敏坤	全州(京)	3		58	李命直	[破州]	1	
15	鄭存謙	東萊(京)	1		59	李奎采	韓山(京)	1	
16	李鎮五	德水(京)	1	李珥 5대손	60	李慶章	青海	2	
17	徐宗華	大丘(京)	1		61	盧以亨	萬頃(公山)	3	
18	柳 乘	瑞山(光州)	6		62	李徹夏	미상[木川]	1	
19	宋相允	恩津[公州]	1	權尙夏 문인	63	朴聖源	密陽(楊州)	5	
20	李頤正	全州[湖南]	1		64	南宮櫺	咸悅	1	
21	鄭陽元	東萊(京)	2		65	崔日復	水原(京)	1	
22	沈柱國	青松[南原]	4		66	吳 璋	미상	6	
23	韓命玄	淸州(驪州)	1		67	金時準	義城(長湍)	2	
24	鄭 鏞	迎日(龍仁)	1	鄭夢周 12대손	68	愼克泰	[利川]	2	
25	鄭纘楷	迎日(龍仁)	1	鄭夢周 11대손	69	李宜哲	龍仁(京)	1	
26	宋勛錫	恩津[懷德]	2	宋時烈 從孫	70	金樂道	仁同(京)	2	
27	金 碇	慶州(龍仁)	5		71	李希仁	미상	1	
28	魚有和	咸從	1		72	鄭觀濟	迎日[開城]	1	정몽주 13대손
29	金華壽	順天[京]	1		73	李 灌	德水	1	
30	李光堉	順天(洪州)	1		74	李命元	[富平]	4	
31	柳 深	미상	1		75	朴文黼	미상	5	
32	金承祖	蔚山[淳昌]	1	金麟厚 후손	76	俞彥鏞	杞溪(京)	2	
33	權 翁	安東(京)	2		77	李基敬	全義(全州)	3	
34	李奎彬	德水(文義)	1		78	崔 祐	[楊洲]	4	
35	閔宗修	미상	1		79	安鳳胤	竹山	3	
36	李心濟	[木川]	3		80	李師範	[海州]	1	
37	徐永後	利川[咸興]	2		81	崔受復	隋城(京)	1	
38	金元行	安東(京)	3		82	李元培	미상	1	
39	沈 潮	青松[高山]	4	권상하 문인	83	李彥愈	德水[海州]	1	李珥 6대손
40	權震應	安東[忠州]	2	권상하 증손	84	李德章	牛峰[龍仁]	2	從弟
41	任聖周	豐川(京)	1		85	李晚膺	牛峰[龍仁]	1	庶從叔
42	金敏材	光山[京]	1	金長生 6대손,	86	李綽紉	牛峰[龍仁]	1	庶從弟
43	金簡材	光山[京]	1	민우수 外姪	87	李濟仁	牛峰[龍仁]	1	庶再從姪
44	李惠輔	延安[京]	8	李鼎輔의 종제	88	李濟遠	牛峰[龍仁]	4	子

* 인물들은 『陶菴集』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각 인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시스템과 『萬姓大同譜』, 『陶庵語錄』(奎1360)을 근거로 하였다. 거주지는 榜目을 기준으로 했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한 경우는 []표시로 구분하였다.

2) 예문답의 내용과 성격

이재의 예문답을 『가례』 체제에 따라 분류하면, 通禮가 34건, 冠禮가 1건, 昏禮가 8건, 喪禮가 144건, 祭禮가 21건이다. 통례에는 祠堂과 神主, 遞遷과 立後, 深衣

制度和 居家雜儀 관련 논의들이 해당되는데, 체천과 관련된 논의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이제는 4대 親盡을 원칙으로 不遷位의 濫設을 비판했고[36, 85]¹⁹⁾ 친진한 신주에 대한 최장방의 제사를 중시하였다[25, 29, 30].

관례와 혼례에 대한 논의는 소략하다. 관례에서는 『가례』에 따른 深衣와 縹布冠의 착용을 강조하였다[43]. 혼례에서는 중국과 달리 異姓親과의 혼인을 꺼리는 조선의 풍속[6]과 同姓 혼인 금지[48] 그리고 세속인 回婚禮에 대한 비판[114] 등을 논의했다.

상례는 복잡한 의례로서, 전체 예문답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並有喪(36건), 立後 관련 服制와 追喪(14건), 改葬(8건) 그 외 구체적인 상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병유상은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동시에 상례를 치르는 것으로, 전란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병유상의 시행 과정에서는 『가례』 등의 예서에 일일이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이 제기되었다. 병유상은 대표적인 변례로서, 『예의유집』 '喪變禮' 항목에서 가장 많은 49조목을 차지한다.²⁰⁾ 입후와 관련하여 본생친에 대한 降服과 뒤늦게 상복을 입는 추상의 절차 등이 논의되었다. 묘소를 옮기는 개장은 『가례』에는 없는 절차로서, 개장 시의 상복이나 虞祭의 시행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제례는 喪中祭祀와 設位·設饌 등의 구체적인 의절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변례에 해당되는 상중제사 관련 문답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례는 슬픔을 드러내는 의례로서, 吉禮인 제사의 시행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상중제사는 의례를 간소화하여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이 논의되었다[66]. 상중에 忌祭를 지낼 때는 예가 이루어졌음을 고하는 告利成의 절차를 제외했고[65], 상례의 卒哭, 祔祭 등이 조부모의 기일과 겹치면 기제는 술 한 잔만 올리는 간략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81, 95].

이제의 예문답은 變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禮經에 근거가 없는 변례의 상황에서 의리에 마땅한 예를 새롭게 제기하는 義起는 필수적인 작업이었

19) <부표1>의 해당 예문답 연번을 [] 안에 표시하였다.

20) 김윤정, 2011 앞의 논문, 172면.

다. 변례와 의기의 문제는 16세기 이황의 예학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황은 의기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非禮를 막기 위한 학자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기를 행했다.²¹⁾ 17세기 김장생의 『의례문해』는 조선의 변례를 범주화하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이후에도 변례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이제는 김장생, 송시열, 박세채 등 先學들의 변례에 대한 대응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의기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변례의 기준을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면서, 무분별한 의기를 경계하였다. 그는 의기란 事勢와 禮律의 사이에서 참작하고 변통하는 것으로, 盛德을 지닌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사세는 일의 형세로서 人情상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고, 예율은 禮經과 國制 등에 수록된 명확한 예학적 근거를 지칭한다.

그대 종질 집안의 吉祭는 事勢로 말하면 매우 절박하여 참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고 禮律로 논하면 지극히 참람하여 끝내 감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개 攝祀라는 명칭은 단지 초상에 상주가 없어서는 안 되고 또 부인이 상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때의 권도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로 인하여 4대의 신주를 고쳐 쓰고 祧遷할 신주를 遞遷한다면, 이는 바로 宗子로 자처하는 것이니 어찌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율과 사세의 사이에서 참작하고 변통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義起이니 성덕을 지닌 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經道를 지키라는 것 말고는 정성스러운 그대의 질문에 끝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²²⁾

이제는 尹啓鼎 집안의 길제 시행에 대하여, 사세의 절박함이 아닌 예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攝主와 宗子の 역할을 구분하는 예율이 명확하기 때문에, 종자가 아닌 섭주는 길제를 지낼 수 없다고 보았다. 의기를 통해 새로운 예를 만들기보다는 예율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제는 사세의 절박함을 들어 예율에 어긋나는 의기를 시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제자인 최일복(1708-1740)은 무후로 사망한 仲父를 위해 출계한 아들의 둘째

21) 한재훈, 앞의 논문, 153-154면.

22) 『陶菴集』 권14, 「答尹仲沃【庚申】」.

아들을 상주로 삼은 후, 신주를 쓰는 題主와 旁題에 대해 질문했다. 중부의 獨子가 伯父를 繼後하여 중부는 무후가 되었으므로, 이에 계후자의 둘째 아들, 즉 중부의 친손자를 상주로 삼은 것이었다.²³⁾ 최일복은 이 상황을 變禮로 간주하면서, 의기를 통해 새로운 예를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재는 이 사안을 변례나 의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중부를 위해 따로 입후하는 것이 大經大法이고 그 외는 모두 구차한 것으로 간주했다. 입후하지 않는다면 班祔의 예에 따라 종손이 顯從祖로 題主하는 것이 그나마 예에 맞는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이재는 사세의 절박함을 참작하는 의기보다 예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다.

한편 문인인 南宮燾은 외손봉사가 非禮임을 알면서도, 李滉과 李珥 등의 사례를 근거로 외손봉사가 인정상 부득이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의 외손봉사를 계승하면서, 본가와 구분하기 위해 4대봉사를 3대봉사로 줄이는 새로운 變禮를 제안하였다. 또한 '顯外曾祖'로 題主하고 자기 이름으로 旁題하는 자신의 예설을 이재에게 확인받고자 하였다.

이재는 외손봉사를 '친족이 아닌 사람의 제사'로 규정한 주자의 설이 정론임을 강조하면서, 이황 등이 행한 외손봉사를 구차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이재 역시 부득이하여 외손이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임시로 행하는 '權奉'의 차원에서 인정했는데, 이 경우 외손이 죽은 뒤에는 외조의 신주를 땅에 묻었다. 대를 이어 계승하는 외손봉사는 '권봉'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재는 외손으로서 3대봉사를 하겠다는 남궁령의 주장에 대해, "非禮 가운데서 참작하여 변통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義起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매한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²⁴⁾ 이재의 답변은 謙辭라기보다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23) 『陶菴集』 권18, 「答崔穉陽【日復】問目【戊午】」, "(문)仲父無嗣, 以出繼子之第二子主喪, 而顯此變禮多有窒礙, 題主及傍題, 將何以爲稱? (답)出繼子之第二子雖權爲主喪, 而至於題主傍題則中間既闕一世, 稱祖稱孫, 決知其不敢矣. 侍養之名, 不見於禮家, 俗雖或有行之者, 金進士昌業丈家 恐難苟從, 出繼子之第一子, 似是宗孫, 以顯從祖題主, 而用班祔之例爲宜, 未知如何, 班祔則無傍題矣. 大抵別爲立後, 卽大經大法, 捨此則皆苟, 而目下通變之不失其正者, 惟此一事差可爾."

24) 『陶菴集』 권18, 「答南宮道由問目【癸亥】」, "(문)外孫奉祀, 朱子斥之以非族之祀, 蓋非禮也."

비례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비례는 명확히 예율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변례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예문답은 사세를 중심으로 변례의 범주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명확한 예율이 있음에도 사세를 강조하여 변례로 논의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적용할 예율을 찾지 못해 의심스러운 사례만을 변례로 인정하고, 의기를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율 자체의 불일치와 예율을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변례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변례 논의를 통해 이제의 변례 인식이 갖는 성격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제의 변례 인식과 논의

1) 立後 관련 의례와 追服 논의

16세기말 이이의 立後議는 의리를 중심으로 하는 입후가 종통 계승의 원칙임을 주창하였다.²⁵⁾ 당시의 입후에 관한 논의는 입후로 인해 맺어진 부자관계가 혈연에 의해 바뀔 수 없다는 의리론적 명분론에 집중되었다. 17세기 이래로 立後가 확대되면서, 계후자의 의례 실천과 관련된 變禮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제는 계후자의 行禮에서 重統과 別嫌을 강조했다. 중통은 본생친에게 降服함으로써, 입후로 성립된 宗統을 오로지하는 것이었다.²⁶⁾ 별嫌은 혐의스러움을 변별

然退翁有云外家無後，不忍其主之無歸，則權宜奉置別所，往來奠省。且栗谷牛溪兩先生，皆奉其外家祀事，是出於不得已之意也。… 或云本家祭四代，則外家祀當減一代，未知如何。父之外祖，於己爲曾祖，則題主當以顯外曾祖書之耶？其傍題則問解有闕之文，然無傍題而奉祀，心或未安則書之無妨耶？（답）朱子非族之祀一句語，實爲正論，以大賢而間不免此者，終是苟也非正也。愚意則爲外孫者，設或不得已，而權奉其祀，己身亡後，卽當埋安矣。如所論則乃於非禮之中，欲參酌而通變之，是惟可以義起者能之，非愚昧之所可及也。”

25) 『栗谷全書』 권8, 「立後議」.

26) 『儀禮注疏』 「喪服第十一」 “齊衰不杖苴。… 爲人後者爲其父母，何以期也？不二斬也。何以

하고 미묘한 차이를 밝히는 예의 원리로 인식되었다.²⁷⁾ 입후가 성립되면 새로운 중통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行禮에서 혐의스러움을 변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미 남의 후사가 된 자가 돌아와서 본생친의 상례를 주관하는 것은 별함과 중통의 뜻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²⁸⁾

입후와 관련된 병유상의 경우, 별함과 중통의 원칙에 따라 本生親의 상은 엄격하게 伯叔父母의 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본생친의 상중이라도 所後父母의 大祥과 禫祭를 지내지 못하는 이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본생친에게는 心喪이 있다는 점에서 백숙부모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심상을 하는 것은 情일 뿐이고 기년복으로 결단하는 것은 禮이므로 정에 구애되어 예를 폐할 수는 없고, 公을 위해 私를 굽혀야 한다고 보았다.²⁹⁾

이렇게 입후는 天에서 정해진 부자관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임금의 명령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엄격한 절차로 인식되었다. 송시열은 “父子는 天性이므로 변경하여 바꿀 수 없는데, 오직 임금만이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명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을 잇게 한다”는 점에서, 임금이 허락하고 해당 관청에서 공문을 만들어 준 뒤에야父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³⁰⁾ 따라서 상중에 입후한 경우, 공문이 도착한 날을 부고를 들은 날로 간주하여 이 날부터 4일째 成服하고, 練祭와 祥祭 또한 문서가 도착한 달을 기준으로 택일하여 행하도록 하였다.³¹⁾

不二斬也? 持重於大宗者, 降其小宗也.”

27) 『禮記集說』 9, 『禮運』 “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

28) 『陶菴集』 권12, 『答李仲通【崇臣○庚申】』 “日前一士友有以此事設難者, 鄙意則出後人者, 又還主生親之喪, 實有違於別嫌重統之義.”

29) 『陶菴集』 권12, 『答李厚而【敏坤】問目【辛酉】』 “出後於人者, 爲其本生親雖自伸其心喪, 而聖人制禮, 則只是伯叔父母之服, 遭親喪者雖有伯叔父母之服, 豈有祥禫不可行之理乎? 今之致疑者曰伯叔父母則無心喪一節, 不可比擬. 然自伸其心喪者情也, 一斷以朞服者禮也. 今於變除之大節, 其可拘於情而廢於禮乎, 抑將伸於公而屈於私乎? 況所貴乎禮者, 爲其別嫌也. 苟於此等處, 不能一視以伯叔父母之服, 則恐非所以嚴一本之義也.”

30) 『宋子大全』 권106, 『答沈明仲』 “父子天性也, 惟人君代天理物, 故命他子以繼無子之人, … 然後承旨次知復下於該曹, 該曹始乃備舉前後事實, 成給公文, 然後乃爲父子.”

이제는 송시열의 예설을 계승하여, 입후는 국가의 허가서인 禮案을 받는 날에 성립된다고 보았다. 상중에 입후할 경우 입안이 나오기 전에는 ‘服人’, 입안이 나온 후에야 喪主로서 ‘喪人’이라 칭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³²⁾ 또한 당시 형제의 자식을 입후할 때 관청에 고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금의 명을 받은 후에야 입후를 통한 부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의 입안을 받지 않고 집안에서만 입후로 간주하여 친부모에게 降服하는 것은 스스로 부자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³³⁾

상중 입후의 경우, 입후가 성립되는 시점은 계후자의 상복과 구체적인 상례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입후가 결정된 후 뒤늦게 상복을 입는 계후자의 追服은 변례의 상황으로 인식되었는데 주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복에 따른 첫 번째 忌日의 의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추복의 경우 성복일로부터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과 연제 날에 차이가 생긴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유를 아뢰는 告辭를 올리고 一獻만 행하는 간략한 의례를 행하도록 했다.³⁴⁾ 반면, 송시열은 추복 시 첫 번째 기일 제사에 대해, “평소의 忌祭와 같게 한다”고 하여 三獻을 허용했다.³⁵⁾ 이제는 상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평소의 기제와는 구분하였고, 연제를

31) 『宋子大全』 권125, 『答基學』 “喪後繼後者, 從啓下文書到家日, 爲聞訃日, 四日成服, 其練祭亦以翌年文書來到月, 擇日行之. 其初忌日, 則以常時忌日例行祭, 而告其退行練事之由, 大祥亦然矣.”

32) 『陶菴集』 권14, 『答任仲思【壬戌】』 “所貴乎立後者, 以其立喪主故也. … 服制之間, 亦不可曉. 禮案出則爲喪人, 未出之前只是服人, 豈有別般自處之道耶?”

33) 『陶菴集』 권13, 『答李生』 “近世人家以兄弟之子爲後, 往往有不告官者, 而此事終是疎闊, 畢竟生出許多難處矣. 夫父子天性也. 惟人君代天理物, 故有繼絕世之義, 在私家則雖以父之尊, 不敢繼天之所絕矣. 是以立後者, 必命於君, 而後乃可爲父子, 此大經大法也. 某人事, 其父之意固已許其出後, 然此只是不命於君而私爲之者, 今於父之喪, 若不斬而期, 則是無君命, 而私自絕於父也. 惡有是哉?”

34) 『陶菴集』 권19, 『答金伯眞【樂道】問目【甲寅】』 “(문)從叔礪無子而歿, 追後立後, 而初期今迫, 告辭何以爲之? (답)當曰, 今以顯考初期之日, 禮當行練事, 而孤子某以昨年十月成服, 月滿之後, 始可追行. 今日則敢用一獻, 略伸情禮謹告.”

35) 주 31) 참조.

지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안함을 간략한 의례로 표현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후사가 된 가계의 조부모에게 追服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鄭陽元은 부친상 중에 입후하면서, 계후자를 장례에 참석시켰다. 그러나 계후자는 아직 국가의 허가서인 禮斜를 받지 못했으므로 조부를 위한 상복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 조부복이 끝난 시점에 예사를 받게 된다면, 상기가 지난 후에 추복하는 稅服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실제 조처하기 어려운 변례”로 규정하였다. 다만 『禮記』 『喪服小記』의 “생전에 만나 보지 못한 조부모와 제부·형제에 대해서 아버지는 稅服을 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는다”에 대한 鄭玄 주와 北齊의 張亮 설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입후가 결정된 날을 자기가 태어난 날로 간주하고, 본생가에 있던 것은 외국에서 태어나 조부모 등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에 所後祖父의 상이 국가의 예사를 받기 전에 있었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稅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³⁶⁾

셋째, 추복의 과정에서 靑연의 철거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례』에서는 삼년상의 경우 만 2년이 되는 再期에 大祥을 지낸 후 靑연을 철거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추복한 계후자는 자신의 성복일로부터 계산하여 삼년상의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재기에 대상을 지낼 수 없었다. 따라서 계후자가 계속 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靑연을 철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靑연의 철거 여부는 예경에 明文이 없는데다, 실제 계후자가 삼년상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의례와 관련되는 것이었으므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36) 『陶菴集』 권13 『答鄭進士【陽元】問目【乙卯】』, “(문)陽元居憂中, 取從兄之子爲後, 趁葬時率來, 而禮斜之後則似有稅服之節矣. 如在小祥後禮斜, 則期年已畢, 無稅服之節耶? (답)出後於人, 而在於所後祖父母喪期年之內, 則其追服與否, 實是變禮之難處者. 惟稍可證者, 喪服小記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 其父稅服, 已則否. 鄭註云生於他國而祖父母昆弟皆在本國, 已皆不及識之, 今聞其死而日月已過, 則父則追而服之, 已則不服也. 北齊張亮駁之, 其說曰生不及者, 是已未生之前已沒云云. 以此兩說旁照, 則今此所後祖父之喪, 在於已未及出後之前, 則或可以已未生前已沒之事爲準. 且未出後而在本生家者, 便可與生於他國一例看, 則稅服恐無所據.”

송시열과 김창협은 계후자의 삼년상과 상관없이 再期 이후에는 醴연을 철폐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했다.³⁷⁾ 반면, 윤증은 “삼년 내에 입후하여 추복하는 경우, 만일 醴연을 거둔다면 이는 추복하는 삼년 동안 도무지 행례가 없음이니, 거두어서는 안 될 듯하다”고 주장했고, 이상정도 “입후하여 추복하는 것은 장차 醴연을 받들려 함”이므로, 醴연을 철폐할 수 없다고 보았다.³⁸⁾ 이재 역시 기본적으로 계후자가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醴연을 철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³⁹⁾

한편 심조는 “醴연을 철폐하지 않더라도 上食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사 때 음식을 올리는 상식은 고례의 경우 졸곡 후에 그만 두는 것이므로, 4-5년을 그대로 행하는 의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재가 추복의 경우 醴연을 철폐하지 않고 조석상식도 철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듣고는, 이를 인용하여 한원진에게 질문했다. 한원진은 醴연을 철폐한 후 그 자리에 虛位를 설치하여 조석곡을 하고 연제·상제·담제를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만에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신령의 떳떳한 도리이고, 3년간 복상하는 것은 자식의 떳떳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송시열의 증손인 宋能相(1709-1758)이 제안한 대로, 대상에 醴연을 철폐한 후 계후자는 廬墓에서 삼년을 마치는 방식에도 적극 동의했다.⁴⁰⁾

심조는 자신과 한원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재는 ‘이

37) 주 41) 참조.

38) 『常變通攷』 권20, 『喪禮·大祥·主喪者未除服則不徹几筵』, “明齋曰, 三年內立後追服者, 若徹几筵, 則是追服三年之內, 都無事也, 恐不可徹. … 先師曰, 喪中立後, 几筵徹否, 未有明文. 然立後承服, 將以奉筵几, 而練祥未行, 筵几遽徹, 則烏在其爲立後也.”

39) 『禮疑類輯』 권17, 『喪變禮·追喪·立後追服者喪出再期後撤几筵當否』, “又曰, 小祥後立後者, 前雖已行小祥, 其爲後之子, 更當行. … 主人旣行三年, 則三年之內, 不可撤几筵.”

40) 『南塘集』 권16, 『答沈信夫【四月】』, “(문)三年內立後者, 再葍雖過, 几筵不可撤, 而上食則似無仍行之義. … 近聞寒泉以上食亦不廢爲當, 二論得失何居? (답)几筵亦不可不撤, 只於舊日几筵所設處, 設虛位, 朝夕哭臨, 變除之節, 亦只哭而除之, 神主旣入廟則服喪而已, 祭則無謂也. 士能以爲几筵撤後, 廬墓以終三年, 其言尤是矣. 神主久不入廟, 固非神道之所宜, 而神主在位, 不上食, 亦豈人情之所安耶? 三年入廟, 神道之常也, 服喪三年, 子道之常也, 而皆禮之大閑, 不可踰越者, 各盡其常, 無違大閑, 不亦可乎?”

禮疑는 평소에 의심을 쌓아두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상식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韋연을 갑자기 철폐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기 때문이지만,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원진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으므로, 다시 깊이 헤아려 취사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⁴¹⁾

(문) 追後에 立後한 자는 대상을 지낸 뒤에 几筵을 철폐해야 합니까? 農巖은 “3년 후에도 그대로 韋연을 두는 것은 끝내 미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고, 尤庵은 “中原에는 혹 3년상을 마칠 무렵에 처음 상을 들은 자가 있으니, 그렇다면 韋연 설치를 6년 동안 해야 할 것인가?” 하였는데, 우암의 이 설은 참조할 만하니, 어떠합니까? (답) 이것은 큰 變禮이니 여러 해 동안 생각하여 겨우 韋연을 먼저 철폐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두 노선생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혹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⁴²⁾

이제는 이 문제를 ‘중대한 변례’로 인식하였고, 고민 끝에 송시열과 김창협이 예설을 따라 韋연을 철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앞서 韋연의 철폐를 어렵게 여겼던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이었다. 이제가 한원진의 예설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韋연의 철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조와의 예문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변례와 관련하여 先儒들의 견해를 충실히 검토했다. 김장생, 송시열, 김창협 등 서인학자들의 예설을 주로 참고했지만, 이들의 견해 역시 논쟁적인 경우가 많았다. 18세기에는 다양한 예설들이 축적되어 있었으므로 변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증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결정한 변례의 예설에 대해서는 당대 학자들과의 논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활발한 학문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1) 『陶菴集』 권14, 「答沈信甫問目」 “(문) 三年內追後立後者, 再期過後, 几筵之撤不撤, 禮無明文. 潮常以爲几筵雖不撤, 上食則當廢, 蓋上食, 古禮卒哭後已罷, 四年五年因行, 恐無其義也. … 近來一議論, 以爲几筵不可不撤, 只於舊日几筵所設處設虛位, 朝夕哭臨, 練祥禫則奉神主出就于位行之. … (답) 禮疑素所蓄疑而未敢決者, 上食亦不可廢云云, 似由於几筵難於遽撤之言, 而亦頗爽誤. 所示一說, 雖差好而未有援據, 當更熟量而取舍, 未知果如何也.”

42) 『陶菴集』 권14, 「答沈信甫問目【甲子】」.

2) 竝有喪의 상복과 義起의 논리

병유상은 대표적인 변례로서, 부와 조부모, 부와 모, 소후부모와 소생부모 등의 상례를 동시에 거행하는 경우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부와 조, 부와 모의 경우는 承重과 壓尊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이제는 기존의 예설들을 검토하고, 의기의 차원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와 조부의 병유상에서 그 아들이 조부를 위해 承重服인 斬衰三年을 입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오복제도에서 부복은 참취삼년이고 조부복은 齊衰不杖期지만, 부가 조부에 앞서 사망하여 그 아들이 조부를 승중하게 되는 경우 참취삼년복을 입었다. 그러나 부의 상중에는 효를 기반으로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있는 이 섬기듯이 한다”는 예율이 적용되면서,⁴³⁾ 부의 사망을 인정하는 시점에 따라 조부의 삼년복이 결정되었다.

『通典』에서 賀循은 부의 成殯을 기준으로 조부복을 결정했다. 성빈 이전 부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차마 돌아가셨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부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고, 성빈 이후에는 삼년복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虞喜는 하순을 비판하면서, 조부에게 기년복을 입는다면 重이 전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손은 성빈 여부에 상관없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장생은 하순의 설을 인용하면서도, 조부를 위해 “기년복만 입는다면 祥祭와 禫祭가 없으니 그것이 옳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옛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는 못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⁴⁴⁾ 송시열 역시 하순설에 비판적이었지만, “사계 선생도 단정을 내린 글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⁴⁵⁾

43) 『中庸章句』 19,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44) 『常變通攷』 권12, 『喪禮·竝有喪·父死未殯服祖周』, “通典, 晉賀循喪服記, 父死未殯而祖父死, 服祖以周. 【虞喜曰, 此謂適子爲父後者也. 父未殯服祖以周者, 父尸尙在, 人子之義, 未可以代重也. 喜以爲若父死未殯, 服祖但周, 則祖無倚廬, 傳重在誰?】 … 問解, 通典父未殯服祖以周, 愚以爲只服朞年, 則是無祥禫, 其可乎? 然古人之言如此, 不敢輕議.”

45) 『宋子大全』 권58, 『與閔大受【辛亥八月】』, “然先師沙溪先生, 嘗以通典說爲未安, 而以爲如此, 則是無祥禫, 其可乎? 然則通典之說, 恐未得爲定論也.”; 『宋子大全』 권103, 『答尹爾和

반면 정경세는 하순설이 인정과 의리에 합당하다고 인식했고, 박세채는 주자의 제자인 黃榦이 하순설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⁴⁶⁾ 그러나 윤증은 하순설을 비판하면서, 적손은 부의 성빈 여부에 상관없이 부를 대신하여 조부를 承重하고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李世弼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세필은 김장생의 문제제기를 인정하면서, 부를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는 象生의 예보다 조부의 喪을 주관하고 조부의 統을 잇고 조부의 重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부의 重에 늘려 아버지의 은혜는 덮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親親보다 尊尊을 우선시하였다.⁴⁷⁾

殯을 하기 전에는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賀循의 설이지만, 이는 선왕들이 제정한 예가 아니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喪이란 하루라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만약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면 1년이 지난 뒤에는 조부의 상을 주관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차마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여길 수 없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대신하여 삼년상의 제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이는 天理와 人情에 몹시도 편치 못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상중에 조부가 돌아가시면 빈의 시행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삼년복을 입는 것이 정당한 도리가 될 듯합니다.⁴⁸⁾

이제는 하순설을 선왕들이 제정한 예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부의 성빈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부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첫째, “상에는 하루라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예기』

【丁巳三月十八日】, “(문)父喪未葬, 長子死焉. … 父喪未殯而祖父死, 服祖以周, 通典言之, 情雖如此, 祖喪無主, 果如何? (답)此二條, 古今議論, 備載於喪禮備要及疑禮問解, 而先師沙溪先生亦無斷之之文, 未知如何而可也.”

46) 『常變通攷』 권12, 『喪禮·並有喪·父死未殯服祖周』, “愚伏曰, 賀循之言, 雖未有先賢折衷之論, 父未殯, 則服祖以周, 求之情理, 似爲合當, 遵行無妨. … 南溪曰, 家禮雖泛言父卒承重則爲祖父, 賀循未殯既殯之說, 勉齋黃氏載通解續, 今難不從其文也.”

47) 『龜川遺稿』 권19, 『禮說○喪禮○並有喪·上明齋』, “通典賀循云, 父死未殯而祖父死, 服祖以周, 既殯而祖父死三年. … 就其全用象生之中代父承重, 繼行其父未畢之喪禮, 此乃尊祖重統之大義. 祖重所壓, 父恩或掩, 初非忍於變在而然也. … 答曰, 所論極其明備, 不勝欽服, 鄙人平日之見, 正亦如此. 常以爲通典此說決不可從, 而但不能說出如來教耳. 極可幸也.”

48) 『陶菴集』 권13, 『答柳進士問目【壬戌】』.

『喪大記』의 “상에 후사가 없는 경우는 있어도, 상주가 없는 경우는 없다[喪有無後, 無無主]”는 예문을 근거로 하였다.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조부의 상을 주관할 사람이 없는 문제에 주목했다.

둘째, ‘아버지의 효심’을 근거로 조부의 삼년복을 주장했다. 부상의 성빈 전 조부 상에 기년복을 입는 것은 차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여길 수 없는 효심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의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효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천리와 인정에 편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앞서 이세필이 존존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식의 효, 즉 친친을 근거로 代服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송시열의 예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송시열은 부와 조부모의 병유상 중 항상 착용하는 상복을 논의하면서, 부상과 조부상의 輕重 문제를 거론했다. 은혜로서는 부가 무겁고 의리로서는 조부가 무겁지만, 의리를 중심으로 하여 조부의 상복을 입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면서도 조부의 상복을 입는 것은 곧 아버지의 효심을 따르는 것으로, 아버지를 높이는 도리에 손상됨이 없다고 설명했다.⁴⁹⁾ 또한 廢疾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에게 삼년복을 입은 閔愼의 대복이 ‘不孝’와 ‘廢父’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송시열은 부를 위해 조부의 상에 대복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효라고 주장했다.⁵⁰⁾ 다만, 이러한 송시열의 예설은 부상의 성빈 전에도 조부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민신 대복 문제에서 송시열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효심’이라는 친친을 통해 ‘불효’ 논란을 해소하는 송시열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병유상의 代服에 적용하였다. 대복의 논점을 부의 은혜를

49) 『宋子大全』 권80, 『答李廈卿』, “以恩則父重而祖輕, 以分則祖尊而父卑. 故禮曰, 自仁率親等而上之, 自義率祖順而下之. 一輕一重, 其義然也. 夫於父三年, 於祖期者, 此主恩而然也. 若祖父偕, 則似當以義斷之, 而以尊者爲主也. 既曰代父服祖, 則其常持祖服者, 乃所以順父之孝心也. 【缺】無損於爲父致隆之道也.”

50) 이정민, 2015 『閔愼 代服 사건의 쟁점과 의미』, 『진단학보』 123, 75-76면.

중시하는 親親과 조부의 중통을 강조하는 尊尊의 충돌이 아닌, 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효심'과 조부를 위해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부의 효심'의 구도로 인식했다. 결국 부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나의 효심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친친의 차원에서 대복과 승중이 시행될 수 있었다.⁵¹⁾ 이재는 자신의 견해가 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리를 기준으로 새로 만들어낸 義起임을 강조했다. 김장생과 송시열에게 질문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謙辭했지만, 자신의 예설을 명확히 드러냈다.⁵²⁾

부상 중 조부상에는 무조건 삼년복을 입는다는 원칙은, 조부상 중 부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재는 代服을 변례로 간주하면서, 『가례』에 실려 있지 않아 人家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여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례에는 하루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예율에 따라, 부가 폐질이 있어 主喪하지 못하거나 喪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모두 대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후자의 경우, 적손은 부가 조부를 위해 입던 삼년복의 남은 일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대복했다. 그런데 조부상의 삼년상이 끝날 무렵 부가 사망하면, 대복한 적손은 남아있는 짧은 기간에만 상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재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적손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삼년상의 일수를 마

51) 승중을 존존이 아닌 친친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역시 禮訟에서 慈懿大妃의 참최복을 친친의 원칙으로 해석하면서, 친친 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장동우, 1998 「다산 예학의 성격과 철학적 함의」, 『한국사상사학』 11, 288-289면). 이러한 친친 중심주의는 起復의 公私論에서도 드러나는 만큼, 조선후기 예론의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다(박종천, 2013 「조선 후기 예론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연구』 31, 164면).

52) 『陶菴集』 권13, 「答柳進士問目【壬戌】」, “愚意則父喪中祖死者, 無論殯與未殯, 皆服三年, 恐爲正當底道理, 而於禮既無可據, 則便是義起, 何敢臆斷. 恨不以此奉質於沙尤諸老先生, 願更存思量而回教之.”

53) 『四禮便覽』 권4, 「喪禮·成服」, “按, 代服一節, 自是變禮. 故家禮不載, 而人家之遭此變者, 當哀迫急遽之際, 未易善處. 茲附先儒說數段於此, 以備參考. 蓋喪不可一日無主, 父或廢疾, 未能執喪, 或未終喪而亡, 其子之爲父代服, 斷不可已. 通典賀氏雖有父死, 未殯而祖亡, 則服祖以周之說, 而其後因宋敏求議, 以再制斬衰爲令. 父喪中祖死者, 亦可代服, 則祖喪中父死者, 尤豈有可論耶?”

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⁵⁴⁾

다음으로, 父喪 중 母喪과 母喪 중 父喪의 경우에는 父在爲母服의 적용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어머니의 상복은 아버지의 생존여부에 따라 齊衰杖期와 齊衰三年으로 구분되었다. 아버지 생존 시 어머니가 사망하는 부재위모상의 경우에, 자식은 존자인 아버지에게 壓尊되어 자취삼년복이 아닌 자취장기복을 입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효자의 마음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사망했어도 삼년상 안에는 그대로 부재위모복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었고,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김장생은 『상례비요』에서 “함부로 논의할 수 없어 일단 諸說을 덧붙여둔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⁵⁵⁾ 『의례』 「상복」의 經文에서는 자취삼년을 “부가 사망했으면[父卒] 모를 위해 입는다”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賈公彥의 疏는 “부가 사망한 지 3년 이내에 모가 사망하면, 기년복을 그대로 입는다”는 설명을 보충했다. 반면, 『통전』에서 杜元凱는 부의 장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삼년상의 진행 절차에 따라 부복과 모복을 바꾸어 입는 방식을 설명했다.⁵⁶⁾ 김장생은 이처럼 서로 다른 예설을 수록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만약 아버지의 상을 마칠 무렵에 또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역시 아버지 상의 3년 이내라 하여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는 점에서 가공언의 소를 비판했다. 이에 하순설을 적용하여 성빈 여부

54) 『陶菴集』 권13, 「答朴士洙問目【癸亥】」, “頃日下教, 以爲父喪中祖死者, 無論殯與未殯, 皆服三年, 爲正當底道理. 以此例之, 則祖喪中父死者, 亦當無論練前練後, 而皆爲三年之服矣. 第祖喪三年幾盡而遭父喪, 則大祥前餘日雖至少, 而亦可代服以盡其日數耶? (답)向日鄙說, 蓋以尤翁已定論, 故欲遵用耳. 大祥前餘日無論多少, 皆當追服以盡其數也.”

55) 『沙溪全書』 권32, 「喪禮備要·成服」, “(喪服疏)父卒三年之內而母卒, 仍服菴. … (通典)杜元凱曰, 若父已葬而母卒, 則服母服云云. … (按) … 猶以通典所云父未殯服祖周之說推之, 而服母菴也. 若父喪將竟, 而又遭母喪, 則亦以父喪三年內, 而仍服菴, 似未安. 不敢輕議, 姑存諸說.”

56) 김장생은 『의례문해』의 병유상 조항에서 『통전』 두원개의 설에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뜻이 없는 것 같다”는 점을 밝혀두었다(『沙溪全書』 권37, 「疑禮問解·喪禮·附并有喪」, “父喪中母死及母喪中父死服. … 杜說, 則似無服期之意. … 杜元凱曰, 若父已葬而母卒, 則服母服, 至虞訖, 服父之服, 既練則服母之服, 父喪可除, 則服父之服以除之, 訖而服母之服.”).

로 모복을 결정하고자 했다. 정작 조부상에는 의심스러워했던 하순설을 모상에 적용하는 것은 모복을 조부복보다 낮추어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경세는 父在爲母期 자체가 奪情임을 지적하면서, 예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후한 면을 따른다는 점에서 부상 중 모의 삼년복을 인정했다.⁵⁷⁾ 김장생과 달리 부의 성빈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 사망한 후라면 당연히 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고 본 것이다. 이외는 반대로, 박세채는 가공언의 소에 따라 부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야 모의 삼년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상 중 조부상과 모상을 각각 ‘承重’과 ‘尊父’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인식하였다. 가공언의 소를 의심하는 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義가 도리어 미약해지고 어머니의 복을 입는 情은 한층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⁵⁸⁾

이러한 박세채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송시열과 윤증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송시열은 박세채의 질문에 답하면서, 가공언의 소를 비판하고 아버지에 대한 壓尊의 의리를 원칙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 父喪의 小祥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기년복은 부의 삼년상 안에 끝나기 때문에 압존의 의리에 합당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만약 부의 삼년상을 마치는 전날에 사망한 모를 위해서도 기년복을 입는다면, 부의 삼년상 후 압존의 의리가 없음에도 모상을 기년으로 끝내는 것으로 常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⁵⁹⁾ 따라서 김장생이 성빈 여부로 모복을 결정한 것과 달리, 소상을 기준으로 모의 삼년복을 주장했다. 윤증 역시 박세채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의 삼년상을 마쳐 압존의 의리가 없음에도 모복을 기년으로 끝내는 것은 短

57) 『愚伏集』 권10, 「答吳汝和【允諧】問目」, “但賀循之言, 雖未有先賢折衷之論, 求之情理, 似爲合當, 遵行不妨. 至於服母以菴, 服母以菴, 乃是屈於父在, 千萬不得已而奪情. 若以父在殯而服母菴, 則恐於心不安, 寧從禮疑從厚之說, 似得.”

58) 『南溪集』 권45, 「答金士直問【喪禮○辛未】」, “愚意爲祖雖其父纔卒, 而所重在承重, 故以既殯爲節. 爲母雖父死已久, 而所重在尊父, 故以服除爲節. … 嘗謂此禮雖重, 到今尊父之義反微, 服母之情較著, 致與禮經本意, 不啻矛盾, 其於人心俗見, 不安誠是矣.”

59) 『宋子大全』 권66, 「答朴和叔【癸丑四月二十四日】」, “父喪中爲母期之疑, 終未能釋然. … 今所諭此年父死, 明年母死者, 母之期尚在父喪未沒之前, 則猶有厭屈之義矣. 若是明日父喪當畢, 而今日母死, 則亦當期, 而期盡之後, 便爲無服之人耶? … 故雖勉齋載之於續解, 終不敢以爲必然而信之也.”

喪이라고 비판했다. 단, 모상의 삼년복을 입는 기준은 김장생과 같이 부의 성빈 이후로 규정했다.⁶⁰⁾

이제는 1742년의 예문답에서, 압존의 의리에 따라 부의 小祥을 기준으로 모복을 결정하였다.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부의 삼년상이 지난 후라면 압존의 의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父喪의 소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부재위모로 간주하여 杖期服을 입고, 이후라면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았다. 부의 삼년상 이후 압존의 의리가 없는데도 모복을 기년으로 하여 인정을 펴지 못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에 실로 미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⁶¹⁾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자식의 人情’에 대한 오랜 논의를 계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1746년 저술된 『사례편람』에는 부상 중 모가 사망하면 무조건 자취삼년을 입는다는 새로운 예설이 이재의 按說로 수록되었다. 가공언의 소를 비판하면서, 『의례』의 경문 내용 그대로 ‘부가 사망했다면[父卒]’ 하루 사이라도 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압존’을 근거로 父喪의 小祥 이후에만 母喪의 삼년복을 인정했던 자신의 예설을 수정한 결론이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가장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던 만큼, 人情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재검토하면서 義起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을 것이다. 『의례』의 경문을 따른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부상 중 모의 삼년복을 허용한 것은 결국 人情의 측면을 극대화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⁶²⁾ 박성원의 『예의유집』에는 『도암집』의 답변이 아닌 『사례편람』의

60) 『常變通攷』 권12, 『喪禮·並有喪·父喪中母死』, “問, 喪服父卒則爲母疏, 父卒三年之內而母卒, 仍服朞, … 爲母, 雖父死已久, 而所重在尊父, 故以服除爲節, 頗似直截, 而意者通解並存其說, 或出此義, 未知如何? 明齋曰, … 若父服垂盡, 而遭母喪者, 欲一朞而除服, 則父服既除之後, 有何尊屈之嫌, 而無故短母之喪邪? 以此每不安於註說, 而欲從備要所引服祖之例, 以既殯爲節.”; 질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南溪集』 권28, 『與尹子仁別紙【戊申正月二日】』에 동일한 질문이 수록되어 있다.

61) 『陶菴集』 권13, 『答柳進士問目【壬戌】』, “愚則以爲母期之畢, 在於父喪三年之內則已, 若三年後, 則雖欲自附於不忍死其親之義, 父服已除, 未有壓尊之義, 母喪徑脫, 終無伸情之地, 此於天理人情, 實爲未安. … 後得尤菴禮疑, 其答人問有曰, 此事父死期年母死者, 母之期尚在父喪未沒之前, 則猶有壓屈之義矣.”

62) 김운정, 2020 앞의 논문, 156면.

안설이 수록되었고, 이후 이재의 정론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사례편람』의 주장은 부상 중 조부상과 모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설들과 차이를 보인다. 김장생부터 박세채까지 여러 학자들은 서로 다른 논지에도 불구하고, 조부상과 모상을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표 3). 『家禮增解』에서 鏡湖 李宜朝(1727-1805)는 자식이 아버이를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어머니를 위해서나 할아버지를 위해서나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례편람』의 예설을 ‘오랜 禮訟의 定案’이라고 평가했다.⁶³⁾ 반면 남인학자 이상정은 부상의 성빈을 기준으로 조부상과 모상의 삼년복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象生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지만, 조부상과 모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이재 예설과의 공통점이다.⁶⁴⁾

한편, 모상 중 부상에서는 부재위모의 예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같은 날 아침에 모가 사망하고 낮에 부가 사망한 경우 부재위모복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재는 비록 몇 시간의 차이라도 모가 부의 생존 시에 사망한 것이므로, 참작하여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⁶⁵⁾ 이 경우는 명확히 부재위모에 해당되므로, 變禮로 논의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재는 대표적인 병유상인 부상 중 조부상과 모상에 대해 의기를 행했다. 이 사안은 명확한 예문이 없는 변례로서, 김장생, 송시열 등의 학자들도 의기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재는 이러한 선유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의기를 행했다. 부상 중 조부상의 경우 대복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을 ‘존존의 승중’이 아니라, 부

63) 『家禮增解』 권7, 『喪禮·成服』 “陶菴說, 直得鄭孔之旨矣. … 備要所謂人子不忍死其親之意, 爲母爲祖, 宜無異同之論, 【見斬衰承重條】 眞可謂千古禮訟之定案. 愚故曰, 父祖偕喪承重之論定, 則此論亦從而可定矣.” 【右父先亡母後亡服母三年】”

64) 『大山集』 권32, 『答權匡伯別紙』 “疏說如此, 而揆以人情, 終有未安, 故沙溪比例於父死已殯服祖三年之義, 竊恐此意甚有斟酌. 愚伏所論亦如此, 故人家多有從之者, 今亦不敢外此爲說耳.” ; 『大山集』 권36, 『答權【相宅】問目』 “來示變禮, 後喪既在先喪未斂殯之前, 則承重服斬, 其於不忍死親之義, 似爲未安.”

65) 『禮疑類輯』 권17, 『喪變禮·并有喪·母喪中父亡仍服母期』 “問, 人有父母同日死者, 其母死於朝, 其父死於日中, 當依父在母喪禮耶? 云云. 【辛聖任】 陶庵曰, 雖數時之頃, 終是母死於父在之時, 惟當一依禮律而已. 誰敢斟酌通變於其間耶?”

의 효심을 따르는 ‘친친의 승중’으로 해석했다. 부상 중 모상에서는 『의례』의 경문을 따른다는 원칙론을 주장했지만, 人情에 대한 오랜 논의를 담아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표 3〉 父喪 중 祖喪과 母喪의 삼년복 논의

부상중 삼년복	『의례』		『통전』		김장생	정경세	송시열	윤증	박세채	이재		이상정
	경문	소	하순	우회						『도암집』	『사례편람』	
祖	-	○	成殯	○	○*	성빈	○*	○	성빈	○	○	성빈
母	○	×	-	-	성빈	○	小祥	성빈	×	소상	○	성빈

○는 삼년복 허용, ×는 불허, 그 외 허용하는 시점을 기록하였다. -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는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제안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이재의 예문답은 근기의 낙론학자들뿐 아니라 지방의 문인들과 호론학자 등 다양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이래로 예서의 확충과 예학의 발달을 통해, 예문답에 참여하는 지식인층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事勢를 중심으로 變禮의 범주를 확장하고 先儒의 예설을 근거로 義起를 행하면서, 이재의 동의를 구했다. 이재는 명확한 禮律이 있음에도 사세를 강조하여 변례로 논의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적용할 예율을 찾지 못해 의심스러운 사례만을 변례로 인정하고, 의기를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율 자체의 불일치와 예율을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변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는 立後와 관련된 追服의 문제를 변례로 인식했다. 17세기 이후 立後가 확대되면서, 계후자의 의례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재는 계후자의 行禮에서 重統과 別嫌을 원칙으로, 본생친에 대한 降服과 국가의 허가서인

禮案을 통한 입후의 성립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후가 喪中에 행해질 경우, 계후자의 追服을 기준으로 상례 절차의 조정, 조부모에 대한 稅服, 靚髮 철거 문제 등이 중요한 변례로 논의되었다. 이재는 다양한 禮經과 선유설을 검토하여 의기를 행했고, 당대 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예설을 재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재는 대표적인 並有喪인 父喪 중 祖父喪과 母喪에 대해 義起를 행했다. 이 사안은 명확한 예문이 없는 변례로서, 김장생, 송시열 등 선유들의 의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재는 이러한 예설들을 검토한 후, 부상 중 조부상과 모상은 모두 삼년복을 입는다는 새로운 의기를 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 중 조부상의 代服과 관련된 불효의 문제를 부의 효심을 따르는 '親親의 承重'으로 재해석했다. 부상 중 모상에서는 『의례』의 경문을 따른다는 원칙론을 주장했지만, 人情에 대한 오랜 논의를 담아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재의 변례 인식과 논의는 변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재는 사세의 절박함보다 예율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무분별한 의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예경의 근거는 모순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가 강조한 예율 역시 가변적이었다. 즉, 이재가 제시한 변례의 기준은 그의 예학적 지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변례에 대한 접근은 결론보다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사세'로 강조되었던 절박한 질문들의 의미와 학자들의 답변이 만들어지는 내면적 논리를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변례의 범주와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접근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20. 4. 30),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부표 1〉 『陶菴集』 소재 예문답 분석

書	연번	집의자	내용	인용	분류
1	1	閔鎭遠	孝章世子 喪중 私家の 墓祭 정지, 절일·삭망 논의		제
	2	李秉常	塲喪에도 신주를 만들고 상복을 벗는 날 靈座를 칠거	정자, 주자, 송시열, 『의례문해』, 『남계예설』	상
			상상에도 졸곡과 부제를 지냄	박세채, 송시열, 『개원례』	상
			상상의 신주에 제주할 때 '童'자를 넣음		상
	3	黃奎河	병유상(國恤중 私喪), 端懿嬪 喪에 관리의 상복은 없고, 상중이면 거에하지 않음		상
4	尹陽來	병유상(所後父-本生母) 心喪중이라도 담제와 길제 거행. 改題 전이라도 追贈된 직함 사용		상	
2	5	李載亨	深衣制度, 韓百謙說 비판	한백겸, 『예기』, 『가례』, 『가례집람』	통
3	6	俞拓基	중국과 달리 異姓 친족을 꺼리는 혼인 풍속 비판		혼
4	7	洪啓禕	병유상(소생부모-소후부모), 練祭를 지냄	김집, 송준길, 『예기』	상
	8	金鎭東	고례와 달리 支子도 후사를 세움		통
	9	李度翼	효령대군은 別子로서 不遷位이므로 親盡 후 묘 아래 사당을 세움		통
	10	李崇臣	出繼子가 生父의 상을 주관하는 것 비판		상
	11	洪啓祚	병유상, 시기가 지나면 禫祭를 지내지 않음	『예기』, 주자	상
	12	洪啓祥	改葬 시 과거 응시는 불가		상
	13	李鼎輔	불천위 봉안장소는 『가례』(묘소)나 우암설(종가)에 따름	김장생, 박세채, 송시열, 정자, 주자, 『가례』	통
	14	李敏坤	玄纁을 관 위에 두는 世俗 비판. 관 곁에 두는 諸先生定論을 따름		상
			병유상(생부-소후부), 소후부는 백숙부모로 간주, 심상 중에도 담제·길제 지냄		상
			서소의 형식, 우암을 따라 백숙부모로 씀	김장생, 송시열	상
15	鄭存謙	병유상, 같은 달인 경우 담제의 시기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차례대로 거행		상	
16	李鎭五	불천위를 건의하는 문제	박세채, 송시열	통	
17	徐宗華	성복 전 上食 불허	현상벽	상	
5	18	柳 乘	시아버지가 부장기를 입는 適婦는 참최복을 입는 장자의 아내임		상
			亡妻의 개장시 아들은 시마복, 부재위모로 압굴되지 만 삼년복의 체모가 있음		상
	19	유 승	시아버지의 적부복은 기년, 서부복은 대공	魏徵, 주자, 『家禮圖』, 고례	상

		父在爲妻의 虞祭·卒哭은 남편이나 아들이 주관, 祔祭만 시아버지가 주관	『상복소기』	상
		병유상(부-조부), 부상 중 조부가 사망하면 殯의 시행과 상관없이 삼년복(義起)	하순	상
		병유상(부-모), 부의 小祥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모복은 기년복, 이후는 삼년복	김장생, 『의례문해속』, 『尤庵禮疑』	상
20	宋相允	失墓한 7대조를 그 부인의 묘에게 함께 제사지냄, 先祖祭는 비관	주자	제
21	李頤正	최장방 장례 후 차장방에게 祧主를 옮김. 성복 후는 너무 급하고 삼년은 필요 없음	송시열	통
22	鄭陽元	조부모의 상중에 입후된 경우 소상 후에는 稅服하지 않음(變禮), 입후 전에 조부모 사망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것과 같음	정현, 張亮, 『상복소기』	상
23	정양원	입후한 후에 祖孫의 의리가 정해지므로 추복할 필요 없음	정현, 張亮, 『우암집』	상
24	沈柱國	병유상, 부상 중 모상의 신주는 亡室이 아닌 妣이고, 조부의 신주는 祖考임	『통전』	상
		위인후자의 처는 본생 시부모에게 大功임	이황, 『상례비요』	상
		부모의 개장 때 3년간 태복하는 것은 예에 없는 예임		상
		고례에서는 사후에만 부모의 이름을 諱했지만, 지금은 생전에도 휘함	『예기』, 『춘추』	통
25	韓命玄	親盡한 신주를 長房에게 祧遷하지 못하고 별묘에 모실 경우라도 장방이 제사함	권상하, 『의례문해』	통
26	鄭鍊	상중 제사를 정하는 것보다 종자를 입후하는 것이 중요		통
27	鄭纘楷	병유상(國恤중 私喪), 국장 졸곡 후 사대부가의 練·祥祭 거행, 期·功을 입는 사람은 연제없이 상복을 벗음		상
28	宋勛錫	병유상, 승중한 장손이 상을 치르다 죽으면 차손이 주관, 부인은 안됨		상
		아버지가 내쫓은 첩은 거두지 않지만, 亂命에 대한 논의 있음		통
29	金 碇	별묘 제사에서는 최장방이 종자 앞에 섬		통
		기일이 같아도 높은 분 먼저 제사 재범		제
30	김 정	古塚에 祭文을 올리고 조상묘를 찾음		통
		별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자의 집이나 묘소에 세움		통
31	김 정	최장방상 중 별묘 제사는 친진하지 않은 사람이 대행		통
32	魚有和	새로 만들었어도 잃어버린 신주를 찾았으면 그것을 사용		통

33	金華壽	실종자의 상례는 실종 시 사당에 고하고 3년 후 에도 찾지 못하면 다시 사당에 고하고 發喪함	송시열, 『통전』	상	
34	李光厚	충해를 입은 신주라도 바꿀 수 없음		통	
35	柳深	長者는 三瘍에 降服하지만, 童子는 長者를 위해 本服을 입음		상	
36	金承祖	불천위가 아닌 金麟厚의 신주를 묘소에 보관할 수 없음	『가례』	통	
37	權翁	병유상, 부모상 중 異姓의 상복 입음, 『예기』와 다른 沙溪說 인용	김장생, 『예기』	상	
		병유상(父母偕喪), 합장한 후 墓祭는 각 탁으로 같이 지냄, 守俗 비판	정현, 『주례』	상	
38	李奎彬	입관 후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형제 먼저 성복하고 上食		상	
39	閔宗修	병유상(모-부), 부모의 靚연에 고하고 아들이 부 대신 11개월에 모의 연제를 지냄		상	
40	李心濟	병유상(승중조-모), 반함은 승중손이 해야 하므로 옮겨다니며 거행		상	
		병유상(소후모-생모), 상주 역할이 중요하므로 소후모 下棺 후 생모상에 가지만, 他室에서 곡하여 슬픔을 표현함	『예기』	상	
41	이심계	입후는 국가의 허기[禮斜]를 통해 성립되고, 이후 본생친에게 降服할 수 있음	송시열	상	
42	徐永後	忌祭와 參禮가 중첩되면 모두 지내지만, 時祭를 지내면 참례는 지내지 않음	송시열, 주자	제	
		병유상, 내상의 장례가 늦어진 경우, 남편과 아들은 장례 후 소상·대상을 지내고 답제는 안 지냄	송시열	상	
6	金元行	각각의 탁자를 쓰지 않고 신주의 덮개만 제거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지만, 종가의 관행을 따름		통	
		『가례』에 따라 관례에 심의·치포관 사용	사마광, 주자, 『가례』	관	
	44	沈潮	남편의 본생외조부모에게는 상복을 입지 않음, 계통을 하나로 하고 예로서 정을 끊는 것임		상
			삼년상 안에 입후한 경우 再期에 靚연 철거 문제(禮疑)	송능상	상
	45	심조	상중 입후 시 靚연은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變禮)	송시열, 김창협	상
			『의례문해』와 달라 차손은 조부상을 주관하더라도 기년복을 입음, 차손도 없고 며느리와 손자며느리만 있다면 손자며느리가 주관	『의례문해』	상
46	심조	병유상, 心喪에는 상복이 없으므로, 다른 상을 만나면 그 상복을 입음		상	
47	權震應	忌祭는 부모를 합제하지 않고 單設하는 것이 禮之正임		제	

48	권진응	관향이 달라도 同姓의 혼례 금지	송시열	혼
49	任聖周	입후의 경우 관청의 禮案이 나온 후에 喪人으로 간주, 支子 입후 허용		상
50	金敏材	병유상, 輕包重特이 아니라 항상 무거운 복을 입고, 가벼운 복은 해당 제사를 지낼 때 입음	송시열, 『예기』, 『가례』	상
51	金簡材	병유상(모-부), 하루 차이라도 부친 생존 시 모상이면 父在爲母服임	박세채, 송시열, 『통전』	상
52	李惠輔	先考 장례를 先妣의 묘소에 직접 고향		상
		靈車가 묘소에 도착하여 奠을 차릴 때, 멀면 새로 하고 가까우면 그대로 사용		상
		敲鑿은 대부의 예임 世俗의 통용 비판		상
		明器는 쓰지 않지만, 筮脯는 행함		상
53	이해보	禫祭 때 영좌의 옛 자리에 신위 설치		상
		祥祭 후 高祖의 사당에 합부하지 못할 경우, 先妣의 신위를 임시로 모시는 곳에 함께 봉안하고 각탁 사용		상
54	이해보	상제 후 倚廬 철거 시기는 상제 이후로 추정	『예기』	상
		상제 후 제사에 곡하는 것은 哀殺에 어긋남	『喪大記』	상
55	尹啓鼎	攝祀를 행하면서 遞遷할 수 없음		통
56	朴挺陽	박지계의 예설로 因襲된 5조목의 오류를 인정하고 『상례비요』를 따르도록 함	박지계, 이이, 주자, 송시열, 박세채, 이황, 정구, 정자, 장자, 『가례』, 『상례비요』, 『趙司業克善三官記』	상
57	박정양	병유상(승중조-모), 길제를 행한 뒤 合櫛	『상례비요』	상
		병유상(승중조-모), 승중손이 병유상으로 담제를 지내지 못하면 차자는 담제 없이 변복	송준길, 이경여, 『의례문해』	상
		병유상, 전상의 담제는 때가 지나면 지내지 않음	『의례문해』, 『주자어류』	상
58	成德朝	장례의 銘旌에 號를 씌		상
59	趙宗溥	職名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은 경우, 處士로 신주와 명정을 씌	『二程全書』	상
60	李渭載	부고를 늦게 들은 경우 소상과 기일을 구분, 소상은 부고를 듣고 1년에 거행, 첫 기일에는 간략히 畢獻하고 하루 전에 사유를 고향		상
61	李明煥	병유상(처-처모), 神道를 중심으로 처상의 연제를 거행		상
62	張學聖	친족에게 수양된 경우, 복을 더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비판	金正國, 송시열, 박세채, 張載, 김장생, 송준길, 『경국대전』, 『상례비요』, 『의례문해속』	상

7	63	閔昌洙	상중에 변란을 만나면 케연을 받들고 산속으로 피난		상
	64	민창수	삼년상에는 케연을 지키며 임금에게 나아가지 않음		상
	65	민창수	상중 기제에서는 利成을 제외		제
			길 위에서 弔問 가능		상
			遣奠하기 전에 朝上食하는 것은 事勢에 편리하지만 禮意에는 어긋남, 午時 발인은 變禮		상
			緇禮에 시마복 입고 吉祭 행함		상
			담제의 길복은 黻袍笠·黑帶임	『상례비요』	상
			길제는 달을 넘기는 정식 제도를 따름, 우암 비판	송시열	상
	66	민창수	조부모의 기년복 중 제사, 忌祭는 장례 후 삼헌, 朔望·節日은 그대로, 時祭·禰祭는 삼년 후, 묘제는 삼년 간 一獻으로 행함	이이	제
			담제는 기일에 지낼 수 있음		상
禰祭는 9월에 지내는데 시제와 가까워도 무관함				제	
67	민창수	민익수 상례 논의		상	
8	68	閔翼洙	서손장방은 신주를 고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庶'라고만 씀		통
	69	민익수	加資·금제·혼례의 일을 케연에 고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지만, 사당에 고할 때와 같이 붉은 관복은 입지 않음		상
			병유상, 分家한 사람의 기년상이 있어도 吉祭를 지냄		상
			병유상(조모-부), 부재위모상의 장례 전 아들이 사망하면 그 아들(손자)이 아버지 대신 상복을 입음	成震齡, 『가례』	상
	70	민익수	병유상(조모-부), 손자가 부 대신 상복을 입는 문제를 상고할 것	『가례』	상
	71	민익수	병유상, 新喪의 부제를 舊喪(조모)의 케연에서 행할 때 상복은 신상의 상복을 입음		상
	72	민익수	병유상(婦-夫), 입관은 부인 먼저, 성복은 남편 먼저, 부인의 상식에 소식을 씀	金亮行	상
	73	閔遇洙	『가례』의 주혼자가 기년상 이상이면 혼례를 치를 수 없다는 조문에는 부모도 포함됨	송시열, 주자, 송준길, 박세채, 『가례』	혼
	74	민우수	弔服加麻는 朋友服이므로 先祖에게 쓸 수 없음		상
	75	민우수	객지에서 상례 시 諸具와 擔軍의 마련		상
	76	민우수	奔喪할 때 묘소에서 절하고 집에 돌아온 후 성복함	『상례비요』	상
	77	민우수	장례 전은 상중의 예법으로 처리하여 致奠을 하지 않음		상
挽章을 반드시 부탁할 필요는 없음				상	
78	민우수	병유상, 삼년상 중 新喪의 묘제는 일현으로 간략히 지냄, 승중 적손은 大祥 때 상복을 벗었다가 다시	송시열, 송준길, 이이, 『栗谷別集』	상	

		입음. 적손이 담제를 지내지 않으면 諸父는 담제일에 제사 없이 상복만 벗음			
	79	민우수	병유상(모-부), 부제모상 중 부가 사망해도 모복을 바꾸지 않음(疑禮)	상	
9	80	申 崑	부제처상에서는 시아버지가 상주, 남편과 자식은 祭主일뿐, 題主의 속칭은 상주를 기준으로 ‘亡子婦’임. 남편의 친척 중 제사지낼 사람이 없어 본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고치지 않음	『예기』	상
	81	安 衢	우제·졸곡·상제·담제는 완전히 길한 제사인 時祭와 구분하여 炙盤은 設饌할 때 함께 올림.		상
			모의 장례시 함묘하지 않더라도 父墓에 고향	『상례비요』	상
			광중에 현훈을 넣을 때 『가례』·『비요』와 달리 世俗例대로 손을 씻음	『가례』, 『상례비요』	상
			졸곡일이 조부모의 기일과 겹칠 때 졸곡제를 지내고 일현으로 간단히 기제를 지냄		제
	82	楊應秀	모든 상에 아버지가 계시면 상주가 되는 것이 원칙	『예기』	상
			개장시 임시로 매장한 후 3개월 만에 시마복을 벗고, 다시 이장할 때 시마복을 입음	『의례문해속』, 김집	상
			합장할 때 부를 동면, 모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禮之正이 아님		상
	83	양응수	3살 이전 수양된 경우 삼년복을 입지만, 3살 이후는 심상만 가능	『가례』, 『상례비요』	상
			본생시부모는 남의 후사가 된 아들의 처를 위해 1등급 강복함	『오복연혁도』, 『가례』	상
			제사에 날것을 쓰는 것은 고례지만, 『가례』에는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익힌 것을 써도 됨	김장생, 이이, 송시열, 『가례』, 『書儀』, 『의례』, 『樂記』, 『예기』, 『격몽요결』, 『상례비요』	제
	84	양응수	적자가 폐질일 때 적손이 대신 상복을 입는 것은 주자의 정론, 방제와 축문은 적자의 이름을 씀	송시열, 박세채	상
			백이와 숙제 중 상주가 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음		상
	85	양응수	문묘와 태묘에 제향된 인물 외에 사사로이 불천위를 삼을 수 없음		통
86	李命直	차자의 아들을 장자에게 입후하는데, 아직 어리므로 차자가 상례를 임시로 거행	『의례문해』	상	
87	李奎采	장례 전에도 선생이나 연장자에게 답장을 함		상	
88	李慶章	5대조·6대조 祧遷 告辭		통	
		祧遷 후 최장방이 신주를 모실 때 告辭	『상례비요』, 『의례문해』	통	

	89	盧以亨	삼년상에 성묘할 때 최복이 아닌 俗制喪服을 입는 世俗을 비판		상
			禘祭 때는 壓尊의 뜻에 따라 곡하지 않음 본생부를 위한 기년복을 입지만, 장례 후에는 소후 부모의 제사를 정상적으로 지냄		제
	90	李徹夏	장인이 스승인 경우 시마복을 입은 후 심상삼년을 함.	黃幹, 丘濬	상
10	91	朴聖源	새벽에 사당에 배알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 함	송시열, 『가례』, 『격몽요결』, 『의례문해』	통
			병유상(조부-부), 조부의 상중에 부가 사망하면 대복하여 日數를 마침		상
	92	박성원	題主 축문의 某는 칭호와 이름을 포함	『상례비요』	상
			卑幼의 禘祭 축문에도 이름을 씀 부고를 듣고 성복한 후부터 달수를 채워 상복을 벗음	『가례』 『상례비요』	상 상
	93	南宮樞	외손봉사는 非禮	이황, 이이, 성혼, 『의례문해』	상
	94	崔日復	출계한 아들의 둘째 아들을 상주로 삼는 것은 구차한 것, 반부의 예를 쓰거나 입후할 것		상
	95	吳瑋	外黨과 妻黨의 상에는 상복이 없는 집안사람들에게 忌祭 등을 대행시킴		제
			時祭는 종가에서 행하지 않더라도, 分家한 支孫이 행할 수 있음		제
			분가한 衆子喪에는 장례 전이라도 제사지냄		제
			영남 풍속에 1월 1일 墓祀를 하루 당겨서 행하는 것은 주자를 근거로 함	이황, 주자	제
			5대조 이상의 무덤은 10월에 한번 제사지냄		제
		禘祭日이 조부모 기일과 겹치면 기제는 한잔만 올려 간략히 거행		제	
96	金時準	나보다 먼저 상을 당한 봉우에게 편지로 위문		상	
		병유상, 같은 집에 상이 나면 조석상식은 성복 전에 폐하지만, 분가한 경우에는 폐하지 않음		상	
97	愼克泰	서자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생모를 위한 시마복에 포망건을 쓰는 것은 잘못 그 아내도 시마복을 함		상	
		서자로 후사가 된 장자 대신 차자가 생모의 신주를 쓸 때 ‘亡母’, ‘孝’자로 쓰되, 朝祖는 하지 않음		상	
11	98	李宜哲	母在爲妻服은 『예기』는 부장기복, 『가례』는 장기복으로 담제 지냄, 죽은 며느리의 신주를 조부의 사당에 임시로 부모	송시열, 『예기』, 『가례』	상
	99	이의철	국상 중이라도 개장 시 상복을 입음		상

12	100	金樂道	추후 입후하여 성복과 연제가 늦어진 경우, 첫 번째 기일에 올리는 告辭		상
			병유상, 처상 중 다른 기년상을 당한 경우 처상의 장례를 미루기 어려우면 우제는 아들에게 대신 지내게 함	송시열	상
	101	李希仁	모상 장례 전 父墓 개장, 아버지의 개장을 중시하여 시마복을 입고, 모친의 우제를 지낼 때 자취복을 입음		상
	102	鄭觀濟	개장 시 우제를 지내지 않으면 영좌 앞에서 奠을 올림	주자, 『상례비요』	상
	103	李 灌	소상 축문의 '小心畏忌'는 쓰지 않음	『상례비요』	상
			소상 이후 조석곡은 중지하지만 한동안 侍立하는 禮례 행함	이황	상
			삼년상 동안은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기 때문에 상식할 때 차를 올린 뒤 밥을 뜸		상
	104	李命元	염습한 뒤 哭位를 만들어 곡함		상
			易服 시 관을 벗는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것	송시열, 김장생, 『의례문해』, 『가례』	상
			아내는 報服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향렬이 높은 친족에게만 강복		상
			鄉俗에서 장사지낼 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비판	정자	상
	105	朴文翰	관례와 계례를 하지 않은 남녀는 아직 어리므로 느슨하게 가르침		통
서자와 서손은 중자손으로 인식				통	
『禮記』「祭統」의 夫婦親之는 군주와 경대부에 해당됨				제	
親迎의 醮子는 종자가 아니라도 행함				혼	
스승도 제자에게 報服함, 師服의 방식은 여러가지이지만 최질이 아닌 조복가마가 원칙			王栢, 黃鞞, 金履祥	상	
106	俞彦鏞	대상 이후 착용하는 망건은 鬃網巾이나 布網巾에 白笠을 쓰는 방식	『의례문해』	상	
107	유언집	삼년 안에 靑연에서 곡을 입시로 중단하는 사례		상	
108	李基敬	백부의 신주를 부모하지 못할 경우 별실에 봉안		통	
		생신 때 獻壽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따름 생신 다례는 禮儀에 맞지 않지만, 삼년상 안에는 무방	주자	상	
109	崔 祐	5대조는 親盡으로 승중 불가	『주자어류』	통	
		5대조 이장시 시마복이 아닌 조복가마함		상	
		조부 생존시 장손이 사망하면 3년복을 입지 않음		상	
		靈筵의 素帳은 장례 후에도 그대로 사용(世俗)	『예기』	상	

110	安鳳胤	복이 없는 사람은 소렴 전에는 길복으로 조문함	『예기』	상	
		조문한 후 상가에 있으면 술과 고기를 먹지 않음. 조문할 때 주인이 재배한 뒤 담배, 세속 비판		상	
		제사에 참여한다면 모두 술과 고기를 먹지 않음	『가례』	제	
	111	李師範	祭需는 생전의 식성과 상관없음		제
	112	崔受復	병유상, 承重代服 인정		상
	113	李元培	병유상(조모-부) 장례가 같은 날이면 장례는 先輕, 우제는 先重	『예기』	상
114	李彦愈	회혼례는 세속일 뿐, 獻壽는 가능		혼	
13	115	或人	달을 넘겨 장사지내는 것은 30일을 넘기는 것	『예기』	상
	116	혹인	庶祖母에게는 상복이 없음	『의례』	상
			적모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첩자는 생모에게 삼년복 을 입음	고례, 『가례』, 『개원례』	상
			외손봉사 불가	송시열	통
			삼년내 遷葬하면 喪處의 예를 씀		상
			위인후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본종을 위해 1등급 강복	송시열	상
			형제의 처와 조카의 처를 위한 강복	『가례』, 『상례비요』	상
			전후처가 사망한 후 입후되었으며 전처를 어머니로 삼음	송시열	통
시집갔는데 남편과 자식이 없으면 본친이 강복하지 않음		상			
117	혹인	亂命에 따른 庶祖母 喪服과 耐廟 비판	권상하, 李諮議	상	
14	118	李德章	입후는 소목을 지켜야 함		통
	119	이덕장	상동		통
	120	李晚膺	첩모의 제사는 아들로 그침		통
	121	李綽紉	四名日 제사를 반드시 참석할 것		제
	122	李濟仁	墓表를 만들 것		상
15	123	李濟遠	혼서의 서식	『상례비요』, 『가례의절』	혼
	124	이제원	問名은 하지 않음. 남을 시켜 술을 내려주는 것은 『 의례』와 『가례』가 다름	주자, 『가례의절』, 『의 례』, 『가례』	혼
	125	이제원	『가례』를 기준으로 혼례의 흥기를 만들	『가례』	혼
	126	이제원	시집간 여자로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 기년복을 입음	『가례』	상

참고문헌

1. 자료

- 『儀禮注疏』, 『禮記集說』, 『中庸章句』, 『家禮』.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日省錄』.
 『四禮便覽』, 『禮疑類輯』, 『常變通攷』, 『家禮增解』, (이상 한국예학총서)
 『栗谷全書』, 『沙溪全書』, 『愚伏集』, 『宋子大全』, 『南溪集』, 『龜川遺稿』, 『陶菴集』,
 『大山集』, 『南塘集』, 『鹿門集』, 『白水集』, 『溪湖集』, 『梅山集』, (이상 한국문집총간)
 『謙齋年譜』, (한국사료총서 60, 『박성원문집』 5)

2. 연구논저

- 권오영, 2009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
 김병현, 2008 「朝鮮時代 變禮에 對한 研究: 喪服 變禮와 그 禮律 解釋方法의 變化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윤정, 2011 「18세기 禮學 연구: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 「18세기 師服의 성격과 실제: 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63.
 _____, 2014 「白水 楊應秀의 『四禮便覽辨疑』 연구」, 『규장각』 44.
 _____, 2020 「조선후기 사례의 전형-『四禮便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김학수, 2012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포은학연구』 10.
 문영표, 2004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관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천, 2013 「조선 후기 예론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연구』 31.
 이경구, 2006 「湖洛論爭을 통해 본 철학논쟁의 사회정치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6.
 이길표 · 김인옥, 2001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에 나타난 祭禮의 문헌적 비교 고찰」, 『생활문화연구』 15.
 이정민, 2015 「閔愼 代服 사건의 쟁점과 의미」, 『진단학보』 123.
 이형성, 2011 「木山 李基敬의 삶과 思想에 대한 一攷」, 『퇴계학논총』 18.
 장동우, 1998 「다산 예학의 성격과 철학적 함의」, 『한국사상사학』 11.
 _____, 2018a 「행례서行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례家禮 연구의 특성 및 함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 『가례집요家禮輯要』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 _____. 2018b 『變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家禮』연구의 특성 및 함의: 『禮疑答問 分類』와 『禮疑類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1.
- 조성산, 2007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 최성환, 2001 『朝鮮後期 李緯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教育』, 『역사교육』 77.
- 최일범 외, 2012 『性齋 許傳의 禮學과 變禮 論議에 대한 연구』, 『온지논총』 32.
- 한재훈, 2011 『退溪 禮學思想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Lee Jae's Ritual Discourses and His Perception of
Transformed Ritual

Kim. Yunjung *

Lee Jae's ritual discourses was directed at various figures, including local followers and Horon(湖論) scholars, as well as Nangnon(洛論) scholars in Near-capital Area. This ritual discourses shows that many examples have been compiled since the 17th century, and the number of intellectuals who can participate in the ritual discourses has also expanded. They expanded categories of the transformed ritual to emphasis on circumstances and defined a new rite based on righteousness, and then asked for Lee Jae's consent. He stuck to his answer to follow principles. He accepted only suspicious cases as the transformed ritual for lack of principles and intended to define a new rite based on righteousness.

Lee Jae recognized later mourning's problem with successornaming as the transformed ritual. On the basis of successors' later mourning, the adjustment of the funeral procedure, mourning for his grandparents, and the removal of the funeral site were discussed in important the transformed ritual. He defined a new rite based on righteousness by reviewing various scriptures and theories, and reviewed and revised his theory through arguments with scholars of his time.

He defined a new rite based on righteousness about Duplicated Funerals. After reviewing the theories, he defined a new rite based on righteousness wearing a three-years mourning when the grandfather and the mother died in the father's mourning. In the process, he reinterpreted the problem of filial impiety associated with wearing the grandfather's mourning instead of the father as 'Chinchi Seungjung' that follows his father'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filial piety. Although he insisted on the principle of YiLi(『儀禮』) about wearing the mother's three-year mourning in the father's mourning period, it was the decision that contained long-standing discussions on empathy.

Key words : Lee Jae, Doanjip, Transformed Ritual, Later Mourning, Duplicated Funerals